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나31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나3147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가단10993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서기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안혜영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강지희, 양규응

변론 종결2018. 10. 30.

판결 선고2018. 12. 4.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가단10993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4. 25. 접수 제442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4. 4.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을나 제5, 6호증'을 '을나 제5 내지 7호증(원고는 을나 제7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을나 제1호증과 을나 제7호증 중 B의 인영 대조 결과에 의하면 B의 인영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을나 제8호증의 1, 2'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착오에 의한 취소 재항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잘못 알아 상속권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한편,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를 포기하는 단독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은 권리 포기 내지 승인, 추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수공이 가지 않는 점, ②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상속인들이 '본인은 D씨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4. 25.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부동산 중 건물 1층방 3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30만 원이고, 반지하방 3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1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상속권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향후 말소등기절차 이행으로 인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합계 40만 원 상당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문의 3. 나. 3) 나)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B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우연

판사송종환

판사임새별

별지